

주주님께

제 5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 50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03월 24일(金요일) 오전 10시 00분
2. 장 소 :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
3. 회의 목적 사항
가. 보고사항 : (1) 감사보고 (2) 영업보고 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나. 부의안건
 - 1) 제 1 호 의안 : 제50기 (2022.01.01 ~ 2022.12.31)
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- 1주당 예정 배당금 : 50원
 - 2) 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[별첨1]
제 2-1호 : 사내이사 이창환 선임의 건 (신규)
제 2-2호 : 사내이사 김대준 선임의 건 (신규)
제 2-3호 : 사외이사 홍승일 선임의 건 (신규)
 - 3) 제 3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- [별첨2]
 - 4) 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- [별첨1]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정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국민은행(증권대행부),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
7. 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본 주주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3년 03월 0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5



문배철강 주식회사
대표이사 배종민



[별 첨 1]

●제 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□ 선임 이사 : 3인 (신규 : 3인)

□ 이사 후보자 명단

구분	성명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 의 관계	임기
사내이사(신규선임)	이창환	문배철강 부사장(現)	이사회	없음	없음	3년
사내이사(신규선임)	김대준	문배철강 상무이사(現)	이사회	없음	없음	3년
사외이사(신규선임)	홍승일	ESG경제 편집인(現)	이사회	없음	없음	3년

●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□ 당기 한도승인 요청액 : 30억원(전기 한도승인액 : 20억원)

- 이사의 수 : 총 3인(中 사외이사 1인)

[별첨 2]

● 제 3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 10조 【 신주인수권】 1), 3) 생략 2) 라. 당회사는 <u>쥬포스코 (본점 소재지:경북 포항시 괴동 1 번지)에 종자 실시 후 당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u>	제 10조 【 신주인수권】 1), 3) 좌동 2) 라. (삭제)	일부조항 삭제
제 33조 【 이사의 직무】 2). <u>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	제 33조 【이사의 직무】 2).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임원 현황에 따른 변경
제 33조의 3 【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】 1) 생략 2)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조 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 33조의 3 【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】 1) 좌동 2)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조 (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상법 최신화에 따른 문구조정
제 37조 【 이사회 결의 방법】 2), 3), 4) 생략 1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 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한다.	제 37조 【 이사회 결의 방법】 2), 3), 4) 좌동 1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한다.	상법 최신화에 따른 문구조정
제 39조 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】 2), 3), 4), 5) 생략 1) 3 - (4)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. 총급여액 :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, 임금, 보수, 상여,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합계액을 말한다.	제 39조 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】 2), 3), 4), 5) 좌동 1) 3 - (4) (삭제) 5. 총급여액 :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, 임금, 보수, 상여,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합계액을 말한다. 다만, 성과보상급여 등 고과 및 평가에 의한 급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에서 제외 한다.	* 법인세법 시행령 최신화 - 시행령 제 44조 4항 삭제 - 시행령 제 43조 1항 변경

주 총 참 석 장

일 시 : 2023년 3월 24일 (금) 10시

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

제 50기 문배철강(주)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.

문배철강(주)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.

소유주식수 : 주

주민등록번호 :
(사업자 번호)

주 주 명 :

※ 대리인 위임장

대 리 인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임 내 용 : 문배철강(주)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
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일체 행위

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.

위 임 자 : (인)



문 배 철 강 주 식 회 사

